

## 품행 규정 및 학군 전체 안전 계획

뉴욕시 교육청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질서정연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환경은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 -교사, 학생, 행정자, 학부모, 카운슬러, 사회복지사, 안전요원, 관련 서비스 제공자, 카페테리아 직원, 청소원, 버스 담당직원 등-이 서로 존중할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 학내 또는 주변의 질서 및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학생들이 높은 학업 수준을 달성하고 교육자가 표준을 목표로 학생을 지도하며 학부모는 자녀들이 안전하고 긍정적인 학교 환경에서 학습한다고 안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주 법에 따라 뉴욕시 교육청은 비상상황 관리 및 위기 중재에 대처하는 종합 뉴욕시 계획과 징계규정을 포함한 품행 규정이 포함된 학군 전체 안전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각 학교는 방문자 관리, 학생 대피, 기타 학교에 특정된 비상 절차를 포함한 빌딩 안전 절차를 규정하는 빌딩 단위의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뉴욕시 학군 전체 안전 계획은 뉴욕시 교육청 안전하고 질서 있는 학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에 규정되고 설명되어 있으며 시스템이 어떻게 폭력 또는 기타 범죄에 대한 대처하는지, 학부모 및 경찰에 어떻게 연락하는지, 잠재적 폭력 행동을 사전에 감지하고 학생간 및 학생과 학교 교직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등이 포함됩니다.

뉴욕시 교육청의 품행 규정은 학생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뉴욕시 행동 기준을 포함합니다. 이 문서에는 학생 중재 및 훈육규정과 학생의 권리 및 의무 장전을 담고 있습니다. 품행 규정에는 규정 위반에 대해 학부모 및 법집행 기관에 연락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다음은 뉴욕시 교육청의 학교 전체 안전 계획 및 품행 규정의 주요 요소를 안내합니다.

A. 학생 및 교직원의 보안과 안전을 위한 정책 및 절차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위협 및 폭력적인 행동 또는 범죄 행위에 대처하는 정책
2. 훈련 및 매치를 포함한 학교 보안 요원에 대한 설명
3. 적절한 법집행 요원, 학부모 및 학교 커뮤니티에 학교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 또는 기타 비상 상황에 대해 알리는 절차
4. 학생 및 학부모가 참고할 수 있는 예방 및 개입 조치에 대한 설명

B. 범죄 위협 및 행위에 대처하는 정책 및 절차

학교 교직원 중 일부는 반드시 물리적 상해에서 폭발물 위협까지 다양한 범죄 행위의 위협 또는 행동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교육감 규정서 및 정책은 학교 관련 사건 또는 범죄, 학생 또는 학교 교직원에게 의한 범죄 또는 의료 비상상황에 대해 법집행 요원에게 연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단 주요 문서 참고).

C. 수색 절차

학생들은 비상식적인 수색 및 압수를 당하지 않을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학생 개인 및 소지품은 학교 교직원이 학생이 법 또는 교육청 징계 표준을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할 수 있는 증거가 수색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타당한 의심을 가질 때만 수색 당할 수 있습니다. 수색의 범위와 정도는 반드시 수색의 목적에 합당하게 관련되어야 하며 학생의 나이 및 성별과 위반의 성질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교육감 규정 A-412 및 A-432 는 학생 개인, 소지품 및 라커 수색을 위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D. 학교 안전 요원

1998 년 9 월 교육청, 교육감 및 뉴욕시는 교육청과 뉴욕시 경찰청 (NYPD) 간에 합동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한 합의를 했으며 이에 따라 학교 보안 요원의 훈련 및 관리를 포함한 학교 보안 기능은 뉴욕시 경찰청이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과 뉴욕시의 합의에 따라 뉴욕시 경찰청은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의 학교 안전 요원을 선발, 훈련, 배치 및 평가합니다.

이 합의에 따라 뉴욕시 경찰청 학교 안전 담당부의 지휘관은 배치 계획 준비 및 학교 안전 리소스 배정에 책임을 가집니다. 이 책임을 행사할 때 다음의 요소가 고려됩니다:

- 학교 인원
- 특수필요 인원
- 학교 시설의 배치 및 크기
- 스캐닝 필요여부
- 교사진
- 학교 안전 요원 감원
- 인근지역 범죄현황
- 인근 학교에 영향
- 학교 내 범죄 발생 수

#### E. 빌딩 수준의 학교 안전 계획

교육감 규정 A-414 에 따라 각 학교는 빌딩 수준의 학교 안전 계획 개발을 위한 교내 안전 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학교 건물 입장 및 방문객 관리 절차, 학교의 명령 체계, 보안 배정 및 스케줄; 침입자 발생 시 절차, 적절한 법집행 담당자 이름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 비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이동성이 제한된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대피 절차 등의 정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 계획은 빌딩 대처팀의 역할 및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모든 비상 대처 절차를 설명합니다. 각 빌딩 수준의 계획은 위험물질 유출, 침입자, 폭탄 위협, 인질극 또는 총격 등 비상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절차로 대피, 쉼터인, 락다운을 규정합니다. 빌딩수준의 계획은 반드시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이 개발한 안전 계획 견본에 부합하고 매년 갱신되어야 합니다. 뉴욕주 교육법에 따라 빌딩 수준의 비상 대처 계획은 반드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공개되어서는 안됩니다.

#### F. 학부모 고지

학교 내 폭력 행위의 위협 또는 실제 발생은 학교 커뮤니티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폭력 위협 또는 발생 시 학교 교직원은 반드시 적절한 법집행 기관에 연락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며 지체 없이 학교 커뮤니티, 특히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의 학부모님들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교육감 규정서 및 교육청 정책 및 절차는 학부모 통지에 대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다음 주요 문서 참고)

## G. 훈육 및 중재 전략

학생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뉴욕시 행동 기준 (훈육 규정:

<http://schools.nyc.gov/RulesPolicies/DisciplineCode/default.htm>)에는 학생 중재 및 훈육규정과 학생의 권리 및 의무 장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모든 학생들이 지키도록 기대되는 행동의 표준과 이러한 표준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지침을 설정하여 책임있는 학생 품행과 존중과 존엄의 분위기를 장려합니다.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훈육 및 중재조치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는 학생들의 학업과 사회성을 모두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적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와 면학풍토를 장려하여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적 감성을 학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 친화적 성격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교직원들은 학습에 방해가 되는 부적절한 학생 행동에 단호히 대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장 및 교감, 교사, 카운슬러 및 기타 교직원들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이 있을 경우 중재 및 징벌을 내리고, 이러한 문제를 학생의 부모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재 전략은 훈육 규정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중재와 예방 접근법으로는 개인 또는 가족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학생 지도 지원 및 서비스; 사회정서적 학습, 분쟁 해결 및 또래 명상/상담, 분노 관리 및 대화방법 습득; 대안 교육 교제 및 교수법 활용; 강화 서비스; 및 대체 학급으로 배정; 기능 행동 평가와 행동상의 문제에 대한 중재안이 조기 중재 전략으로 개발 되고 검토되어야 합니다.

학생과 연관을 맺고 그들에게 목적을 이해 시킬 수 있는 중재와 예방 전략의 활용을 통하여 교직원은 학생의 학습과 사회적 감정적 성장을 촉진하고 학교의 규정과 정책을 따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 교사는 최적의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학업 및 행동 기법 및 접근을 사용합니다. 가이던스 카운슬러 등의 지원 스태프가 포함된 학제간 팀이 모든 학교에 있습니다. 이 팀은 "위험한 상태"의 학생이 겪을 수 있는 특정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략을 고안하고 이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 주요 문서

다음은 학군의 학교 안전 계획 및 품행 규정을 구성하는 주요 문서입니다:

학생 중재 및 훈육 규정과 학생의 권리 및 의무 장전, 유치원-12 학년.

교육감 규정 A-411 행동 위기 고조 방지/중재 및 911 연락

([http://schools.nyc.gov/NR/ronlyres/5DA279FE-5664-4B3D-86CB-659EFFBA3D8D/0/A411\\_52115.pdf](http://schools.nyc.gov/NR/ronlyres/5DA279FE-5664-4B3D-86CB-659EFFBA3D8D/0/A411_52115.pdf))

교육감 규정 A-412 학교 내 보안

(<http://schools.nyc.gov/NR/ronlyres/78BB9C02-2634-4EC2-955D-7097DD511E06/0/A412RegwAdvisory22615.pdf>)

교육감 규정 A-413 학교에서의 핸드폰 및 기타 전자제품 사용

(<http://schools.nyc.gov/NR/ronlyres/8C04CC15-F156-4578-9775-53B98638D650/0/A413Final22615.pdf>)

교육감 규정 A-414 안전 계획 (<http://schools.nyc.gov/NR/ronlyres/381F4607-7841-4D28-B7D5-0F30DDB77DFA/80066/A414FINAL.pdf>)

교육감 규정 A-418 성범죄자 공지

(<http://docs.nycenet.edu/docushare/dsweb/Get/Document-152/A-418%20%204-11-06.pdf>)

교육감 규정 A-420 체벌

([http://docs.nycenet.edu/docushare/dsweb/Get/Document-19/A-420\\_\\_11-16-04.pdf](http://docs.nycenet.edu/docushare/dsweb/Get/Document-19/A-420__11-16-04.pdf))

교육감 규정 A-421 언어 폭력

(<http://docs.nycenet.edu/docushare/dsweb/Get/Document-20/A-421.doc.pdf>)

교육감 규정 A-432 수색 및 압수

(<http://docs.nycenet.edu/docushare/dsweb/Get/Document-21/A-432.pdf>)

교육감 규정 A-443 학생 훈육 절차

(<http://docs.nycenet.edu/docushare/dsweb/Get/Document-22/A-443.pdf>)

교육감 규정 A-450 비자발적 전학 절차

(<http://schools.nyc.gov/NR/ronlyres/381F4607-7841-4D28-B7D5-0F30DDB77DFA/97053/A4501202011FINAL.pdf>)

교육감 규정 A-750 아동 학대 (<http://schools.nyc.gov/NR/ronlyres/381F4607-7841-4D28-B7D5-0F30DDB77DFA/97056/A7501202011FINAL.pdf>)

교육감 규정 A-755 자살 예방/방지

(<http://schools.nyc.gov/NR/ronlyres/381F4607-7841-4D28-B7D5-0F30DDB77DFA/109109/A75581811FINAL.pdf>)

교육감 규정 A-830 불법 차별/괴롭힘 내부 불만 제기

(<http://schools.nyc.gov/NR/ronlyres/8D6081A7-2945-40C1-90B7-F725BD4FA5D5/0/A830.pdf>)

교육감 규정 A-831 또래 성희롱

(<http://schools.nyc.gov/NR/ronlyres/821E130E-8DCB-4787-A6B9-2968D587359A/0/A831101211.pdf>)

교육감 규정 A-832 학생 대 학생 차별적 괴롭힘, 위협 및/또는 따돌림

(<http://schools.nyc.gov/NR/ronlyres/55EF6553-0FE8-40A0-8B3B-2D255D28A84D/0/A832.pdf>)

학부모 권리 및 책임 장전

(<http://schools.nyc.gov/RulesPolicies/ParentBillOfRights/default.htm>)

## 1. 빌딩 수준의 학교 안전 계획

교육감 규정 A-414 에 따라 각 학교는 빌딩 수준의 학교 안전 계획 개발을 위한 교내 안전 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학교 건물 입장 및 방문객 관리 절차, 학교의 명령 체계, 보안 배정 및 스케줄; 침입자 발생 시 절차, 적절한 법집행 담당자 이름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 비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이동성이 제한된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대피 절차 등의 정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 계획은 빌딩 대처팀의 역할 및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모든 비상 대처 절차를 설명합니다. 각 빌딩 수준의 계획은 위험물질 유출, 침입자, 폭탄 위협, 인질극 또는 총격 등 비상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절차로 대피, 쉼터인, 락다운을 규정합니다. 빌딩수준의 계획은 반드시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이 개발한 안전 계획 견본에 부합하고 매년 갱신되어야 합니다. 뉴욕주 교육법에 따라 빌딩 수준의 비상 대처 계획은 반드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요 문서

빌딩 수준의 학교 안전 계획 관련 주요 문서:

교육감 규정서 A-414 (<http://schools.nyc.gov/NR/rdonlyres/381F4607-7841-4D28-B7D5-0F30DDB77DFA/80066/A414FINAL.pdf>)

학교 안전에 대한 학부모 안내서 (추후 게시 예정)